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10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 박상웅・김민전・유용원

윤한홍 · 김도읍 · 신동욱

김미애 • 이인선 • 박덕흠

고동진 • 최보윤 • 박정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 지휘 등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등에 소방청 소속 전문인력의 지식 및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산불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고 산세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산불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소방청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제1 항 등). 법률 제 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소방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초로"를 "기초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여 소방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은 소방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
험지도) ① (생 략)	험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②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	
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	
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관의 장 및 <u>산림재난방지유</u>	<u>산림재난방지유관</u>
<u>관기관의 장</u> 에게 배포하여야	기관의 장(소방청장을 포함한
한다.	<u>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
한 실태조사) ① (생 략)	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u>기초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기초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	
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	

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 <후단 신

<u>.</u>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설치하여 소방청장과 협의를
<u> 거친 후</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
영) ①
이 경우 제1호
<u>이 경우 제1호</u>

<u>설></u>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 수
	행은 소방청장과의 협의를 거
	<u>쳐야 한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